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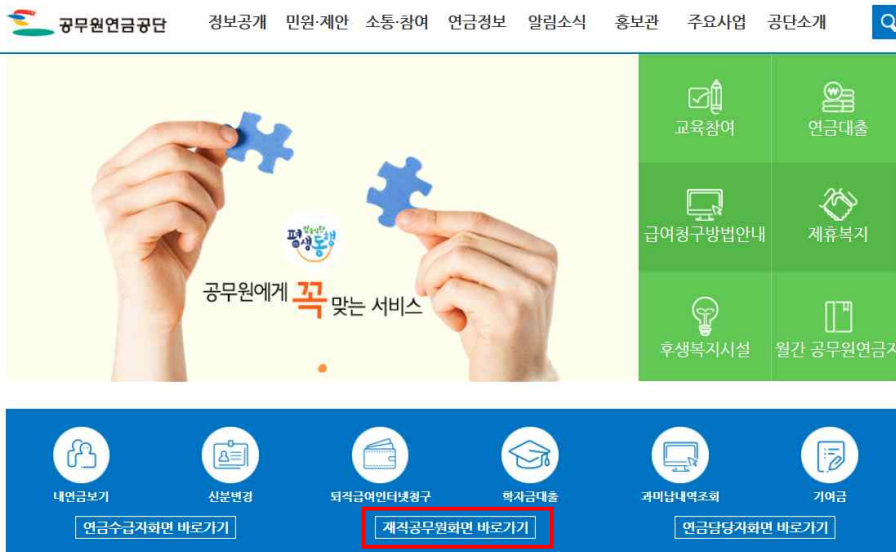
특별공급알선 인터넷신청 매뉴얼

☞ 김포한강 Ac-01a블록 인터넷신청은 2018.03.27.(화) 09:00~17:00까지 가능합니다. ☞

1.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www.geps.or.kr)에 접속합니다.



2. 화면 가운데 하단 “재직공무원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 연금수급자의 경우, ‘내연금보기’를 클릭합니다.

3. ‘재직공무원을 위한 내연금보기 자주찾는 서비스’에서 ‘주택분양’을 클릭합니다.



3. 공인인증서로그인 또는 일반로그인 합니다.(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 회원가입후 로그인합니다.)



4. 고객지원시스템의 상단 메뉴중 '주택분양임대' → '주택분양' → '분양신청서작성 클릭



5. 분양신청서 작성

분양신청서 작성

단지: - 선택 - 분양공고일:

무주택서약,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알선대상자 선정지리방법 사전동의

본인은 분양신청을 함에 있어서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임을 확인하여 또한 중 주택의 입주시까지 무주택세대구성원일 것을 서약합니다.
 무주택기간을 포함한 분양 신청자료의 내용은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만약 알정자로 선정된 후 신청자료와 다르게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인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당첨취소, 계약취소, 주택 기수해자 등록 등의 처리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면 우리 공단지역 주택사입 수혜를 받을 것으로 관리되며, 향후 우리 공단의 임대주택에 영구히 입주할 수 없으며, 우리 공단의 분양주택이나 특별공급금 선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순위가 2순위 또는 3순위로 변경됩니다.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알선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특별공급 알선대상자로 선정되기까지는 알선신청을 철회할 수 있으며, 신청 철회에 따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본인은 이 건 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 1항 또는 제22조의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자가 아래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공동이용 대상정보 대상정보: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공동이용 대상 행정정보는 목적의외 용도로 사용될 수 없음

'무주택서약,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알선대상자 선정지리방법'에 동의합니다.

인터넷 분양신청 메뉴얼을 숙지하였습니까? 예 아니요

잠깐!!

1. 단지명에 “김포한강 Ac-01a블록 10년 공공임대”를 선택
2. ‘무주택서약 및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사항에 “동의합니다”를 선택합니다.
3. 착오방지를 위하여 인터넷 분양신청메뉴얼을 필히 숙지하시고 “숙지하였습니다” 선택합니다.

6. 신청자정보사항 입력(인적사항, 직계존속 부양여부, 신청형)

신청자 정보 ※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의 거주지 주소를 입력하여 주세요. (직장 주소 등은 안됩니다.)

| | | | |
|-------------|---|----------|---|
| 신청연두번호 | | 신청연 설명 | |
| 기관코드 | | 기관명 | |
| 접수일자 | <input type="text"/> | 접수번호 | |
| * 주소 | 62268 <input type="text"/> | | |
| 주택전화번호 | <input type="text"/> | 직장전화번호 | <input type="text"/> |
| * 휴대전화 | <input type="text"/> | 이메일 주소 | <input type="text"/> |
| 직계존속부양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 3자녀 특별공급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
| 마이너스입선 선택여부 | <input type="radio"/> 일반형 <input type="radio"/> 마이너스입선형 | 시스템 에어컨 | <input type="radio"/> 예 <input type="radio"/> 아니요 |

* 마이너스입선형을 선택한 경우 시스템에어컨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위 선택사항은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하니,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잠깐!!

1. 직계존속 부양여부는 주민등록등본상 3년이상 계속하여 함께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예”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2. 주소는 주민등록등본상의 **현주소**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아래쪽 칸에는 상세주소를 반드시 입력하여 주십시오)
3. 전화번호는 연락가능한 번호 2개이상(**휴대폰 번호 및 직장 번호** 반드시 입력)를 입력하여 주십시오.
4. 신청 주택형 선택
“51A” 선택

7. 무주택기간 및 재직기간 관련 입력사항

무주택기간 및 재직기간

| | | | |
|--------|----------------------|-------------------------------------|------|
| 혼인신고일자 | <input type="text"/> | 만 30세(생일) 또는 혼인신고 일자를 기준으로 무주택기간 산정 | |
| 주택처분일자 | <input type="text"/> | 입력(변경)된 정보에 대한 최종검토 확정가능 필요 | |
| 무주택기간 | 년 개월 | 재직기간 | 년 개월 |

※ 기본무주택기간은 신청자연령 만 30세부터 산정한 기간입니다.
 ※ 기본무주택기간은 분양공고일을 기준으로 산정되었습니다.
 ※ 주택처분사실 입력
 - 과거에 주택을 처분하였던 사실이 있는 경우 주택처분일자를 선택하여 주세요.
 - 여러 주택을 소유 처분하신 경우 최근의 주택처분일자를 선택합니다.
 - 주택처분일자는 처분하신 주택의 등기부등본에서 처분으로 인한 “소유권이전 등기접수일자”를 의미합니다.
 (등기원인일자, 즉 처분(매매) 계약일자 등과 무관하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자 기준임)
 (등기부등본은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발급열람 가능합니다.)

잠깐!!

1. 기본 무주택기간은 분양공고일(2018.03.20.)을 기준으로 신청자연령 만 30세부터 산정한 기간으로 자동 산정됩니다.
2. 혼인신고일자는 만 30세이전 혼인한 경우에만 입력하세요.
 ※ 혼인일은 혼인관계증명서상 혼인신고일을 입력해 주세요.
3. 신청인 또는 신청인의 배우자가 주택처분사실이 있는 경우는 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건축물대장등본은 처리일)을 입력합니다.
 (2회 이상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 최근에 처분한 주택에 한함.)
4. 재직기간은 공무원연금법 기준으로 자동산정되어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